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의료급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권덕철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정신병원을 별도 의료기관 종류로 신설하는 「의료법」 개정[법률 제17069호, 2020.3.4. 일부개정]에 따라 「의료급여법」 하위법령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「의료법」 개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한 자구 수정(안 별표1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0.00 ~ 0.00.)

대통령령 제 호

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제3호나목 중 “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”을 삭제하고, “종합병원”을 “정신병원·종합병원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제3호나목 2) 중 “요양병원·종합병원”을 “요양병원·정신병원·종합병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 1]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(제13조 관련) 1 ~ 2. (생 략) 3. (생 략) 나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·한방병원·<u>요양병원</u> (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<u>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</u> <u>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「장</u> <u>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</u> <u>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「의</u> <u>료법」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</u> <u>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하</u> <u>다. 이하 같다).</u><u>종합병원</u> 및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 종합병원에서 「국민건강보험 법」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 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·3인 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	[별표 1]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(제13조 관련) 1 ~ 2. (생 략) 3. (생 략) 나. ----- -----·<u>요양병원</u> (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「의료법」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.<u>정신병원·</u> <u>종합병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에 한정하여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. 1) (생략) 2) <u>병원·한방병원·요양병원·종합병원</u>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을,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을 각각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한다.	1) (생략) 2) -----·<u>요양병원·정신병원·종합병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	
연락처	(044) 202 - 3092